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4438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redacted]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군수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5. 4. 28. 선고 2014구합81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13.
판 결 선 고	2015. 1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4,892,710원, 지방교육세 8,205,410원, 농어촌특별세 9,449,7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판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지방세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람이지만(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참조), 예외적으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3항 참조). 그리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였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다(지방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를 거실 등의 용도로 변경하는 데 든 비용은 원고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아니라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시공사와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지급한 비용이므로 지방세법 제10조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가 주체구조부인 이 사건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발코니를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비에 포함되어 취득원가를 구성하지만 수분양자들이 이미 설치된 발코니를 거실 등의 용도로 변경하면서 지급한 비용은 취득원가를 구성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지 않는 수익적 지출로서 수선(인테리어) 비용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 근거하여 그 공사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받기 이전에 시공사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가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공사를 완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발코니의 용도가 변경된 상태의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다. 한편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그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니라 수분양자들이 시공사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와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데 든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은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분양자들이 비용을 지급하여 발코니의 용도가 거실 등으로 변경되었어도 사용승인일 이전에 원고가 그와 같은 상태의 아파트를 취득한 이상 그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4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서현석

판사 임창훈